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1993. 09. 17 개정 2001. 02. 21 개정 2008. 02. 28 개정 2008. 03. 21 개정 2008. 05. 07 개정 2016. 12. 26 개정 2024. 06. 24 개정 2025. 09.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와이티엔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제9조 ②항에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 11인 이내로 한다.
- ③ 이사회에는 총이사수의 4분의 1이상의 사외이사를 둔다.

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사임, 사망, 질병, 사고 등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근하는 이사 중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순으로 이사회의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단,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근 이사중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제6조(감사의 출석)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8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는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거나, 감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사 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5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 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부의안건) ①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사항
- 2. 결산 재무제표의 작성 의결
- 3. 영업보고서의 승인
- 4.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 5. 준비금의 자본전입
- 6.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 7.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 8. 장기차입에 관한 사항
- 9.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10. 연도별 예산의 확정, 경정
- 11. <삭제>2001. 2. 21
- 12. 회사재산의 저당권 및 질권등 담보설정
- 13. 타인을 위한 보증 및 담보의 제공
- 14. 대표이사의 선임
- 15. 이사의 업무분장
- 16. 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
- 17. 중요한 송사에 관한 사항
- 18. 정관 및 사규에서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 19. <삭제>2001. 2. 21
- 20.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이 대상법인 자본금 대비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21. 신규시설투자,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결정이 자기자본 대비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 22. 등기임원 보수의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의 결정
- 23. 대표이사 사장이 부의한 사항
- 24. 국(실) 이상의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 25.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26. 경영성과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상황
- 27. 방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 실태
- 2.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집행 결과
- 3. 이사회가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 4. 대표이사 사장이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집행임원 선임 및 보수의 승인

제13조(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사장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있다.

제14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